

사회교육개발원 강사료 지급 내규

제정일: 2015.01.23.

개정일: 2019.02.20.

담당부서: 사회교육개발원 행정팀(033-760-2702)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사회교육개발원 평생교육강좌의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의구분) 사회교육개발원 강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일반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
2. 대학의 졸업인증을 위한 정보인증대체인정강좌

제3조(대상) ① 적정 수강생(10명 이상)이 등록하여운영되는 모든 평생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다. (단, 수강생 10명 미만 교육과정은 총 수강료 수입의 70% 내에서 강사료 지급)

②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 및 계약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위탁 교육과정
2. 기업체 및 협회(단체)와 공동 운영하는 교육과정
3. 일부 교육이 학교의 실습 설비 및 교보재를 이용하지 않는 교육과정

제4조(강사료 지급) 강사료 지급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강사료는 수강료 수준과 연계하여 [별표1]과 같이 지급한다.

제5조 <삭제>

제6조(인센티브 지급 기준) 평생교육강좌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인원 수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[별표2]에 의거 지급한다.

부칙

- (1) (경과조치) 이 내규 제정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- (2)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3)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4)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(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별표1, 별표2)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강사료 지급 기준

교육수준 구분	시간당 수강료(원)	시간당 강사료(원)
소양과정	5,000원 미만	25,000
기초과정	5,000 ~	30,000
	6,000 ~	32,500
초급과정	7,000 ~	35,000
	8,000 ~	37,500
중급과정	9,000 ~	40,000
	10,000 ~	42,500
고급과정	11,000 ~	45,000
	13,000 ~	50,000
전문가과정	16,000 ~	60,000
지도자과정	20,000 ~	75,000

[별표2] 강사료 인센티브 지급

수강생 수	인센티브 지급액
11명-15명	10명 초과 수강료 수입의 30%
16명-20명	15명 초과 수강료 수입의 40%
21명 이상	20명 초과 수강료 수입의 50%